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1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정성호·김남희·김정호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안태준 • 윤후덕 • 이연희

임미애 · 한정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계획 성격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시행계획 성격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과 특정 도시에의 인구 쏠림 현상 등으로 쇠퇴 도시의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 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본계획·시행계획 단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중복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행정절차로 작용 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 방식을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신에 간소화된 방식인 주민 공람 절차로 변경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쇠퇴하는 도

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

법률 제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를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로, "한다"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주민공람"으로 한다.

제56조제7항 중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주민 공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
정 및 승인 등) ①・② (생	정 및 승인 등) ①・② (현행과
략)	같음)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	③
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	
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
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	<u>여하며, 제시된</u>
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u>의</u> 의견을 들어야 <u>한다</u> . <u>이 경</u>	이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
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	영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	
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	
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u>본다.</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⑤
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 ⑩ (생 략)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 ① ~ ⑥ (생 략)
-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 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 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의 심의 및 특별위 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할 수 있다.

주민 공람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텅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7	
주민 공람	